별첨1. 제재 및 포상 기준

[시행 2025.7.24.] [CP규정 별첨1. 2025.7.24. 개정]

1. 제재 기준

위반수준	제재		제재 대상행위
	위반자	상위 관리자	
상	인사위원회 회부 / 교육이수 조치	좌동	위반수준 “상”
중	서면 경고장	좌동	위반수준 “중”
하	사유서	-	위반수준 “하”
	주의	-	

가중	-. 유사 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되는 경우 -. 불성실조사 대응 및 허위진술 -. 동일조사에서 동일인의 지적 건수가 다수인 경우 -. 기타 고의·악의적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가중이 필요한 경우
감경	-. 법 위반 자발적 인정 및 반성 -. 신입사원 혹은 해당업무 미숙련자의 업무 미숙 -. 자율준수노력, 사전업무협의 등 위법행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-.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 -. 자진 신고 -. 경영여건 등 특별히 고려할 이유가 있는 경우

2. 제재 대상행위

① 위반수준 “상”

가.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업무협의를 하지 않거나 사전업무협의는 하였으나 자율준수관리자 검토의견에 반하여 **법 위반행위 업무를 강행**한 경우

나.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**시정조치, 과징금 등 그에 준하는 처분**을 받거나, 법원의 판결로 인해 **회사에 금전적 피해**를 끼친 사실히 확인되는 경우

다. 위 가~나 제재조치 받은 이후에도, **유사한 법 위반행위 반복**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 전담부서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

라. 정당한 사유없이 **CP 점검·조사에 불응** 하거나, 조사자료를 **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**

마. 최근 5년내 **CP 서면경고를 2회 받고 재차 CP 서면경고** 대상행위를 한 경우

② 위반수준 “중”

가.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위반 행위이나 위반수준이 “상”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

나. CP 운영지침중 **사전업무협의 미준수, 모니터링·내부제보시스템 통해 확인된 지침 위반행위**는 위반수준을 “중”으로 하고, 사안의 법위반가능성·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 또는 경감

다. 정당한 사유없이 CP 위반사항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의 **시정요구를 불이행**한 경우

라. 다른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**제보하지 않은 경우**

마. 최근 5년내 **CP 사유서를 2회 제출하고 재차 CP 사유서 제출** 대상행위를 한 경우

③ 위반수준 “하”

가. 정당한 사유없이 CP 교육을 불이행한 경우

나. CP 점검·조사에 불성실 참여한 경우

3. 용어의 정의

-. 인사위원회 회부

규정 위반자 및 상위관리자의 행위가 위법·부당하여「상벌관리규정」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.

-. 교육이수 조치

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석을 명령한다.

-. 서면 경고장

규정 위반으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엄중 경고가 필요한 경우 서면 경고한다.

-. 사유서

지침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상황과 원인 등을 기술하고 위반자의 입장 소명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다.

-. 주의

지침 위반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.

4. 포상 기준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포상</th><th>포상 대상</th></tr>
<tr><td>최고경영자</td><td>공로상, 모범상</td><td rowspan="2">-. 내부 제보자
-. CP 모니터링 결과 우수 조직
-. CP 교육 이수 우수자
-. CP 추진성과 우수자 등 공정거래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
-.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한 자
-.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 받은 자</td></tr>
<tr><td>자율준수
관리자</td><td>격려금, 상장</td></tr>
</table>

가점	-. 시스템 개선 등 법위반 방지체계 수립 -. 리스크 자진 시정 -. CP확산 기여 행사/활동 수행
감점	-. 법 위반 분쟁발생으로 사건 진행중인 경우 -. 사전업무협의대상 미협의 사실 확인된 경우 -. 정기 작성 서약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-. CP 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-. 법 위반시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

-. 최고경영자 포상은 공정거래 문화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회사의 '공로상' 또는 '모범상'을 최고경영자에 건의하고,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에 추천되며,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관리규정에 따른다.

-. CP 포상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수여 또는 지급한다.